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공고 제2026-128호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통지서(을) 공시송달 공고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서(을)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11. 6.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인

1. 건 명: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체납에 따른 채권압류통지서(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6. 11. 7. ~ 2026. 11. 22.(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전주고용노동지청(2층) 고용관리과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전주지청 고용관리과 주무관 현성우(Tel. 063-240-33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